

청탁 금지법 바로알기

(feat.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

판례와 Q&A로 보는 청탁금지법



정의

대상직무

제재사항

주요판례

Q&A

Chapter 01. 부정청탁이 뭐지??

“부정청탁의 금지”

☑ 부정청탁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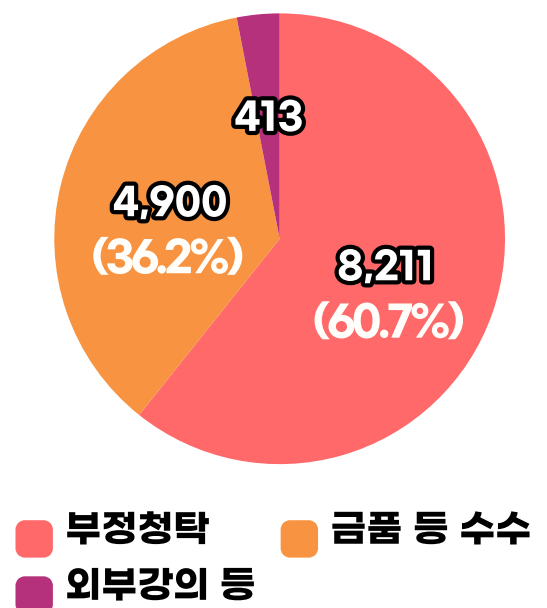
인사(채용·승진 등), 계약, 학사업무(입학·성적·논문심사·학위수여 등) 등 법에 명시된 대상 직무와 관련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도록 하는 것

☑ 적용대상

1. 공무원 또는 법률에 의해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2.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3. 각급 학교장과 교직원 또는 학교 법인의 임직원
4.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16.09.28.~`19.12.31.)

위반신고 건수
13,524건



Chapter 02. 내 직무는 부정청탁 대상일까?

“14가지 부정청탁 대상직무”

☑ 대상직무(법 제5조 제1항)

(1호) 인·허가·면허 등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해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

(2호) 각종 행정 처분 또는 형벌부과의 감경·면제 직무

(3호) 채용·승진 등 공직자 등의 인사에 관한 직무

(4호)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의 선정·탈락 직무

(5호) 각종 수상·포상 등 선정 탈락 직무

(6호)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에 관한 직무

(7호) 계약당자사 선정·탈락 관련 직무

☑ 관련사례(예시)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재외공관장에게 사증발급 요청

지자체 불법 현수막 게시 관련 과태료 감경 요청

면접위원으로 선발이 예상되는 직원들에게 자녀 면접번호를 알려 우호적 평가를 부탁

언론중재위원회, 학교·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특정인 선정 또는 탈락 요구

자격요건에 미달됨에도 공공기관 주관 표창 수상자로 선정 요청

입찰 관련 예정가격 누설 요청

특정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 요구

Chapter 02. 내 직무는 부정청탁 대상일까?

“14가지 부정청탁 대상직무”

☑ 대상직무(법 제5조 제1항)

(8호) 보조금·기금 등의 배정·지원
또는 투자 등에 관한 직무

(9호) 공공기관의 재화 및 용역의 거래
관련 직무

(10호)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 등 관련 업무

(11호) 병역 관련 직무

(12호)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관련 직무

(13호)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관련 직무

(14호)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 등
관련 직무

☑ 관련사례(예시)

특정인 또는 단체에 보조금, 출연금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배정 요구

국립대학교병원의 입원 접수 순서를
당겨달라고 요청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반하는
내용 부탁 및 사실과 다른 내용 작성 요구

병역판정기준을 위반하여 특정 신체등위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검사결과 적합
하지 않은 부분이 있음에도 적합판정 요구

민간업체의 법령 위반행위 묵인 지시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강제처분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요청

Chapter 03. 위반하면 어떤 제재를 받지?

“부정청탁 금지 위반행위”에 따른 제재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

"허가 낼 수
있게 해줘"



민원인 A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

"A 허가신청 건
잘 좀 처리해줘"



친구 B(일반인)



친구 C(공직자등)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



담당 공무원 P

"민원인 A"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친구 B(일반인)"

2천만원 이하
과태료

"친구 C(공직자등)"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담당 공직자(공무원) P"

형사처벌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Chapter 04. 판례는 어떻게 있지?

“부정청탁 금지, 주요 판례”

공직자인 부모가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의
무기계약직 채용시험에
응시한 자녀에 대한
우호적인 평가 점수를
평가위원회에 청탁하여
채용

제3호(채용·인사)

- 면접위원
벌금 300만원
- 부모
과태료 1,200만원

지방의원이 회계부서에
수의계약 체결 대상이
아님에도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업체와
의 방제사업 구매 계약
체결을 청탁하여
수의계약

제7호(계약)

- 지방의원
과태료 1,500만원

대학교수가
해당 수업을 위해 위촉된
외부강사 등에게
수업 미출석자를
출석으로 수정해 달라고
청탁

제10호(학사 행정)

- 대학교수
과태료 200만원

Chapter 05.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금품 수수 등의 금지 사례 묻고 답하기 ”

원활한 직무 수행의 목적이란?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이 인정될 경우에는,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 경조사비(5만원)(단, 회환 등 10만원) 가능

1. 목적 인정

- 통상적인 업무회의, 간담회, 자문회의 등

2. 목적 불인정

- 인허가신청인, 지도 단속대상자, 입찰 상대방, 고소 고발인 등이 담당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01

감사기간 중입니다.

피감기관 직원에게 음식물 접대를 받아도 되나요?

A. 안됩니다.

감사기간 중에는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고·의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02

논문 심사 중입니다.

심사대상 대학원생에게 도시락세트를 받아도 될까요?

A. 안됩니다.

심사대상자로부터 법정 심사료가 아닌 **식사 등을 받는 것은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고·의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03

인사평정 기간입니다.

하급자에게 선물을 받아도 되나요?

A. 안됩니다.

인사평가 대상자와 평가자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직무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안됩니다.

04

직무와 관련된 업체로부터 정기적으로 식사나
선물을 받아도 되나요?

A. 안됩니다.

식사와 선물을 받는 횟수가 장기간 또는 정기적으로 반복될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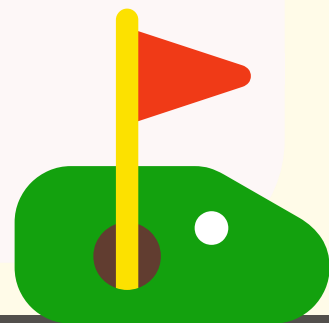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보기 어려워 안됩니다.

05

업무관계자가 골프비를 내겠다고 합니다.
선물로 보아도 될까요?

A. 안됩니다.

청탁금지법상 골프접대는 선물로 인정되지 않고,
그 상당액만큼 금품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06

직무와 관련된 업체로부터 정기적으로 식사나
선물을 받아도 되나요?

A. 안됩니다.

식사와 선물을 받는 횟수가 장기간 또는 정기적으로 반복될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보기 어려워 안됩니다.

07

직무와 관련한 식사 3만원 제한,
하루 기준인가요?

A. 식사는 1회가 기준입니다.

단, 시간과 장소가 가깝게 이어질 때에는
합산 3만원을 넘어선 안됩니다.

예) 1차 식사, 2차 술자리가 이어지는 경우

08

식사와 선물을 동시에 받을 때에는
8만원까지인가요?

A. 아니요.

식사자리에서 선물을 받을 경우,

식사는 3만원, 전체 총액은 5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예) 식사 4만원, 선물 1만원(허용 X)



“공정하고 청렴한 대학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